파트 B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

뉴욕주 교육부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
2013 년 7 월

3-21 세 장애 아동을 둔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는 뉴욕주 특수교육위원회(Committee on Special Education, CSE) 또는 유치원특수교육위원회(Committee on Preschool Special Education, CPSE)의 중요한 회원이다. CSE/CPSE 는 아동의 특수 교육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학부모는 아동의 특수 교육 필요에 관해 논의하고 결정하는 CSE/CPSE 회의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다음 정보는 특수 교육 과정을 통보받고 이에 관여하며 아동이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FAPE)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연방법과 주법에 명시된 학부모의 법적 권리인 절차상 보호조항에 관해 설명한다.

이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 사본은 학부모에게 적어도 1 년에 한 번, 또한 다음의 경우 제공해야 한다.

- 초기 의뢰시 또는 학부모가 아동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 학부모가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 학기 중 중재 또는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는 첫 번째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경우
- 학군이 학기 중 처음으로 학부모가 뉴욕주 교육부(NYSED)에 제출한 주민원 사본을 받은 경우
- 학교 배정에서의 변경을 초래할 징계 사유로 인해 아동의 정학 또는 퇴교 결정을 내린 경우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는 미교육부(USDOE)가 개발한 견본 양식을 토대로 수정되었으며 뉴욕주의 요건에 관한 정보를 추가했다.

The University of the State of New York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P-12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ion

목차

일반 정보 1
이전 서면 통지(권고사항 통지) 1
모국어 2
전자 메일 2
학부모 동의 - 정의 3
학부모 동의 3
독립 교육 평가 6

정보 비밀 보장 8
정의 8
개인 신원 확인 8
학부모에 대한 통지 8
열람권 9
열람 기록 9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기록 9
정보의 유형 및 소재지 목록 10
수수료 10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10
심리의 기회 10
심리 절차 10
심리의 결과 11
개인 신원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11
보호조항 11
정보 파기 12

주 민원 절차 13
적법 절차 심리 민원과 주 민원 절차 간의 차이 13
주 민원 절차 확립 13
최소 주 민원 절차 14
민원 접수 15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절차 16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16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16
견본 양식 18

중재 18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및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학교 배정 20
합의 과정 21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23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23
심리권 24
심리 판결 25

항소 26
최종 판결, 항소, 공정한 재심 26
심리와 재심의 기한 및 편리성 27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민사소송 27
변호사 비용 28

장애 아동 징계 절차 31
교직원의 권한 31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34
환경 결정 34
항소 35
항소 기간 동안의 학교 배정 36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의 보호 36
법 집행기관과 사법 당국에 신고 및 이들 기관의 조치 37

공공, 민간 혜택/보험 이용 38
공립 및 민간 보험/혜택의 사용 38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 아동 38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40
개요 40

공공, 민간 혜택/보험 이용 41
공립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 아동 41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 아동 42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43
개요 43
참고 자료 44

일반 정보

이전 서면 통지(권고사항 통지)

34 CFR 300.503 항; 8 NYCRR 200.5(a) 및 (c)항

통지

다음의 경우, 학군은 학부모에게 매번 서면으로 통지(서면으로 특정 정보 제공)해야 한다.

1. 학군이 아동의 장애 판정, 평가 또는 교육 배정, 혹은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FAPE) 제공을 개시 또는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경우, **또는**
2. 학군이 아동의 장애 판정, 평가 또는 교육 배정, 혹은 적절한 무상 공립교육 제공의 개시 또는 변경을 거절하는 경우

이전 서면 통지가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는 학군의 조치와 관련된 경우, 학군은 동의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를 통지할 것이다.

통지의 내용

서면 통지는

1. 학군이 제안하거나 거부하는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
2. 학군이 해당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학군이 해당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하는 결정에 사용한 각 평가 절차, 평가, 기록 또는 보고서를 기술해야 한다.
4.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파트 B의 절차상 보호조항의 규정에 따라 학부모에 보호수단이 제공됨을 기술해야 한다.
5. 학군이 제안 또는 거부하는 조치가 1차적인 학생 평가의 추천이 아닌 경우, 학부모가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에 관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6. 장애인 교육법(IDEA)의 파트 B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자원을 포함해야 한다.
7. 자녀의 특수교육위원회(CSE) 또는 유치원특수교육위원회(CPSE)가 고려했던 다른 방안들을 기술하고 그 방안들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또한**
8. 학군이 해당 조치를 제안하거나 거부한 다른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통지

통지는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학부모가 사용하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단 명확히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이다.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이 문어가 아닌 경우, 학군은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통지를 학부모의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두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2. 학부모가 통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3. 1, 2 항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모국어

34 CFR 300.29 항; 8 NYCRR 200.1(ff)항

영어 구사력이 제한된 개인이 사용하는 모국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개인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또는 아동의 경우 학부모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2. 아동과의 직접적인 접촉(아동 평가 등)에서, 가정 또는 학습 환경에서 아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청각 또는 시각 장애인, 혹은 문어가 없는 개인의 경우, 의사소통 방식은 이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식(예: 수화, 브라유식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이다.

전자 메일

34 CFR 300.505 항; 8 NYCRR 200.5(a), (f) 및 (i)항

학군이 학부모에게 이메일로 문서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이메일로 다음 사항의 수신을 선택할 수 있다.

1. 사전 서면 통지(권고사항 통지)
2. 절차상 보호조항 통지, **및**
3.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관련 통지

학부모 동의 - 정의

34 CFR 300.9 항; 8 NYCRR 200.1(l)항

동의

*동의*는 다음을 의미한다.

1. 학부모는 모국어 또는 다른 의사소통 방식(수화, 브라유식 점자 또는 구두 의사소통)으로 자신이 동의하는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를 통보받았다
2. 학부모가 해당 조치를 이해하고 이에 서면으로 동의하며, 동의서는 해당 조치를 설명하고 공개할 기록(존재하는 경우)과 공개 대상자를 기술한다. 또한
3. 학부모는 동의가 자신의 자발적 행위이며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동의한 후와 철회하기 전에 실행한 조치를 무효화(실행 취소)할 수 없다.

학부모 동의

34 CFR 300.300 항; 8 NYCRR 200.5(a) 및 (b)항

1 차 평가 동의

학군은 제안 조치에 관한 사전 서면 통지를 먼저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고, 또는 ***학부모 동의절에 기술된 동의를 얻지 않고는 아동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정하기 위해 아동에 대한 1 차 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

학군은 아동이 장애아인지를 판정하는 1차 평가를 위해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의 1 차 평가에 대한 동의는 학군이 아동에게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동의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동이 공립학교에 입학했거나 아동을 공립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하며 학부모가 1 차 평가에 대한 동의를 거절했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아동이 취학 연령인 경우, 학군은 의무는 아닐지라도 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활용하여 아동에 대한 1 차 평가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학군이 아동을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더라도 이는 아동을 찾아 장애 여부를 판정하고 평가해야 할 학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은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

주정부 보호 대상자의 1 차 평가를 위한 특별 규정

아동이 주정부의 보호 대상자이고 학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 학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아동이 장애인 인지를 판정하는 1차 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1. 학부모의 동의를 받으려는 합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학부모의 소재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 주법에 따라 친권이 해지된 경우, **또는**
3. 판사가 학부모가 아닌 제 3 자에게 교육에 관한 결정을 내리고 1 차 평가에 동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뉴욕 주에서 주정부 보호 대상자는 21 세 이하의 아동 또는 청소년을 가리킨다

1.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358-a, 384 또는 384-a 항, 혹은 가정법원법(Family Court Act) 3, 7 또는 10 조에 따라 배치되거나 송환된 자 또는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383-c, 384 또는 384-b 항에 따라 입양될 수 있는 자, 또는
2. 사회서비스청장 또는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담당실의 보호를 받는 자, 또는
3. 사회서비스법(Social Services Law) 398(1)항에 규정된 빈민 아동인 자

서비스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학군은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처음 제공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뉴욕주에서는 아동이 7/8월에 특수 교육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기 전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학군은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처음으로 제공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받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부모가 아동이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동의에 거부하는 경우, 학군은 학부모 동의없이 아동에게 (CSE 또는 CPSE가 추천하는)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의 또는 판결을 얻기 위해 적법 절차(예: 중재, 합의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사용할 수 없다.

학부모가 아동이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처음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에 응답하지 않고 학군이 학부모의 동의를 구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 학군은 아동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2. 학군은 IEP 회의를 개최하거나, 동의를 요청한 자녀의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위해 IEP를 개발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학부모 동의 철회

해당 지역 학군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학부모가 동의 철회(취소)를 지역 학군에 서면 통보하는 경우, 지역 학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게 된다.

1. 계속하여 아동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2. 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나 판결을 받기 위해 행정 절차 과정(예, 중제, 조정 회의 또는 공정한 법적 절차 청문회)을 사용할 수 없다.
3. 계속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대신 아동을 위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준비하는 것은 위반 사항이 아니다.
4. 아동을 위해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 회의를 하거나 IEP 개발을 하지 않는다. <u>또한</u>
5. 동의 철회를 이유로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동의 교육 기록에서 삭제하여 수정하지 않는다.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 동의

학군은 아동을 재평가하기 전 학부모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입각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학군이 다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1. 학군이 아동의 재평가를 위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u>또한</u>
2. 학부모가 응답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가 아동의 재평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의무는 아닐지라도 아동의 재평가에 대한 동의 거부를 무효화하기 위해 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이용하여 아동의 재평가를 추구할 수 있다. 1 차 평가에서와 같이, 학군이 이러한 방식으로 재평가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문서화

학군은 처음으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1차 평가, 재평가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기울인 합리적 노력, 1차 평가를 위해 주정부 보호 대상자 학부모를 찾기 위해 기울인 합리적 노력을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학군이 기울인 노력을 기록해야 한다.

1. 전화 통화 기록 또는 통화 시도 내역, 통화 결과
2. 학부모에게 보낸 서신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답변의 사본, <u>및</u>
3. 학부모의 가정 또는 직장 방문과 그 결과에 관한 상세한 기록

보험 이용에 대한 학부모의 동의

학군은 *공공, 민간 혜택/보험 이용*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부모의 민간 또는 공공 보험금을 이용하기 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부모가 입학시킨 학생 및 집에서 지도되는 학생들에 대한 동의

아동을 자비로 사립학교에 입학시키거나 홈스쿨링으로 교육하는 학부모가 아동의 1 차 평가 또는 재평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학군은 동의 무효화 절차(예: 중재,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서비스는 부모가 자비로 사립학교에 입학시킨 장애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음).

기타 동의 요구사항

다음의 경우, 학군은 학부모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 학군이 아동의 평가 또는 재평가의 일부로 기존 데이터를 검토하는 경우, **또는**
2. 학군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테스트 또는 평가를 아동에게 실시하는 경우. 단 테스트 또는 평가 전에 모든 학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학부모가 한 서비스 또는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학군은 이를 토대로 학부모와 아동에게 다른 서비스, 혜택 또는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

학군은 학부모가 특정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해 아동으로부터 무상 공립교육(FAPE)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절차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독립 교육 평가

34 CFR 300.502 항; 8 NYCRR 200.5(g)항

개요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학부모는 학군이 실시한 아동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독립 교육 평가(IEE)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학부모가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은 IEE 를 실행하는 장소, IEE 에 적용하는 학군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의

*독립 교육 평가*란 아동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군에 고용되지 않은 적격의 검사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가리킨다.

*공공 비용*이란 학군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의 조항에 따라 전체 평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다른 방식을 통해 학부모의 비용 부담없이 무상으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조항은 각 주정부가 IDEA 파트 B 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주, 지방, 연방, 민간 자원과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공공 비용으로 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는 학군이 실시한 자녀 평가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IEE)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아동의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a) 아동에 대한 학군의 평가가 적합함을 입증하는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제출하거나 또는 (b) 학부모가 따로 받은 아동의 평가가 학군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심리에서 입증하지 않는 한 공공 비용으로 교육 평가(IEE)를 제공해야 한다.
2. 학군이 심리를 요청하여 학군의 아동 평가가 옳다고 최종 판정된다 하더라도, 학부모는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 비용으로 받을 수는 없다.
3. 학부모가 아동의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하는 경우, 학군은 자신이 실시한 자녀 평가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학부모에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군은 설명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공 비용으로 아동의 독립 교육 평가(IEE)를 제공하는 것 또는 학군의 평가 결과를 방어하기 위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수 없다.

학군이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아동 평가를 실행할 때마다 학부모는 공공 비용으로 단 한번의 독립 교육 평가(IEE)를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주도 평가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아동의 독립 교육 평가(IEE)를 실시하거나 자비로 실시한 아동의 평가 결과를 학군과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

1. 해당 평가가 IEE 에 대한 학군의 독립 교육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학군은 아동에 대한 무상 공립교육 제공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2. 학부모 또는 학군은 아동에 관한 적법 절차 심리에서 평가 결과를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공정한 심리관에 의한 평가 요청

공정한 심리 담당관이 적법 절차 심리의 일환으로 아동의 독립 교육 평가(IEE)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 비용은 공공 비용으로 부담해야 한다.

학군 기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IEE)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 실시 기준(예: 평가 장소, 평가자 자격)은 학군이 평가를 1 차적으로 실행할 때 사용한 기준과 (이 기준이 IEE 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와 일치하는 정도로) 동일해야 한다.

상기 기술한 기준을 제외하고, 학군은 공공 비용으로 독립 교육 평가(IEE)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특정 조건이나 기한을 적용할 수 없다.

정보 비밀 보장

정의

34 CFR 300.611 항

정보 비밀 보장절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파기*란 정보가 더 이상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정보에서 개인 신원 정보를 물리적으로 파기 또는 삭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기록*이란 34 CFR 파트 99(1994 년 가족교육권 및 사생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of 1974), 20 U.S.C. 1232g (FERPA)의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 기록"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의 기록을 가리킨다.

*참여 기관*이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입수한 정보에서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 보관 또는 사용하는 학군, 기관, 조직을 가리킨다.

개인 신원 확인

34 CFR 300.32 항; 8 NYCRR 200.5(e)항

*개인 신원 정보*란 다음을 포함하는 정보를 가리킨다.

(a) 아동 이름, 학부모 이름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 이름

(b) 아동의 주소

(c) 아동의 사회보장 번호, 학생 번호와 같은 개인 신원 정보, **또는**

(d) 아동의 신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적 특징 또는 기타 정보

학부모에 대한 통지

34 CFR 300.612 항

뉴욕주 교육부(NYSED)와 학군이 개인 신원 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개인 신원 정보의 비밀 보장에 관해 확실히 알리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적절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1. 통지서가 주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의 모국어로 제공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
2. 개인 신원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대상 아동,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의 유형, 정보 수집에 사용하는 방법(정보를 수집한 출처 등), 정보의 용도에 관한 설명
3. 개인 신원 정보의 보관, 제 3자 공개, 보유, 파기 등과 관련하여 참여 기관이 준수해야 할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요약, **및**

4. 정보에 대한 학부모와 아동의 모든 권리(예: FERPA, 34 CFR 파트 99의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권리 등)에 관한 설명

주요 신원 확인, 소재지 파악, 평가 활동("아동 찾기")에 앞서, 학부모에게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파악, 신원 확인, 평가하고자 하는 활동을 통지하기에 충분한 부수를 발행하는 신문, 기타 매체 또는 둘 다에 해당 조치에 관한 통지를 게재하거나 발표해야 한다.

열람권

34 CFR 300.613 항; 8 NYCRR 200.2(b)(6)항 및 200.5(d)(6)항

참여 기관은 학부모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학군이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하는 자녀에 관한 교육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불필요한 지체 없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관련 회의 또는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합의 회의 또는 징계 심리 포함)가 열리기 전에, 그리고 요청 후 45 일 이전에 아동의 교육 기록을 검사, 검토하고자 하는 학부모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 기록을 검사, 검토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기록의 설명, 해석에 대한 합리적 요청에 대해 참여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기록의 사본을 받지 않고는 이를 효과적으로 검사하고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참여 기관이 기록 사본을 제공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및
3. 학부모의 대리인이 기록을 검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리

참여 기관은 후견인 직무, 별거 또는 이혼과 같은 사안에 적용되는 주정부 해당 법률에 따라 학부모에 권한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에게 아동 기록을 검사,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열람 기록

34 CFR 300.614 항

참여 기관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이용하는 교육 기록을 열람한 당사자(부모, 참여 기관의 인가 직원에 의한 열람 제외) 정보(당사자 이름, 열람한 날짜, 당사자가 기록을 이용하도록 허락 받은 용도 등)를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기록

34 CFR 300.615 항

교육 기록에 한 명 이상의 아동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아동에 관한 정보만을 검사, 검토하거나 특정 정보만을 통보 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의 유형 및 소재지 목록

34 CFR 300.616 항

학부모 요청 시, 각 참여 기관은 기관이 수집, 보관 또는 이용하는 교육 기록의 유형과 소재지 목록을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수수료

34 CFR 300.617 항

기록 검사, 검토에 대한 학부모의 효과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각 참여 기관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학부모에 제공하는 기록 사본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정보를 조사하거나 검색하는 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부모의 요청에 따른 기록 수정

34 CFR 300.618 항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수집, 관리 또는 이용하는 자녀의 교육 기록 상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자녀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를 관리하는 참여 기관에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참여 기관은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요청을 접수한 후 납득할 만한 시간 내에 정보 수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여 기관이 학부모의 정보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거부 결정을 통보하고 ***심리의 기회****절에 기술된 심리 요청 권리가 있음을 통보해야 한다.*

심리의 기회

34 CFR 300.619 항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참여 기관은 아동 교육 기록 상의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으며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위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기록 된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심리의 기회를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한다.

심리 절차

34 CFR 300.621 항

교육 기록상의 정보에 이의를 제기할 심리는 FERPA 하의 심리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심리의 결과

34 CFR 300.620 항

심리 결과, 참여 기관이 기록상의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아동의 사생활 또는 다른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정된 경우, 참여 기관은 이에 따라 해당 정보를 수정하고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심리 결과, 참여 기관이 기록 상의 정보가 정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없으며 아동의 사생활 또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정보에 관한 학부모의 의견 또는 학부모가 참여 기관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자체 보관 중인 아동의 기록에 삽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아동의 기록에 삽입하는 이러한 설명은

1. 참여 기관이 기록 또는 문제시 되는 정보를 보관하는 한, 아동 기록의 일부로 함께 보관해야 한다. <u>또한</u>
2. 참여 기관이 아동의 기록 또는 문제시 되는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개인 신원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

34 CFR 300.622 항; 8 NYCRR 200.5(b)항

정보가 교육 기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FERPA 에 따라 부모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는 한, 참여 기관의 직원 이외의 타인에게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아래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

전환기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본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는 참여 기관의 직원에게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 전, 학부모의 동의 또는 주법에 따라 성인(18 세)이 된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동이 학부모 거주 지역의 학군에 위치해 있지 않은 사립학교에 다니거나 진학할 예정인 경우, 사립학교 소재 학군직원과 학부모 거주 지역 학군 직원 간에 아동에 관한 개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기 전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조항

34 CFR 300.623 항

각 참여 기관은 수집, 보관, 공개, 파기 단계에서 개인 신원 정보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각 참여 기관의 한 직원이 개인 신원 정보의 비밀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

개인 신원 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는 모든 개인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FERPA에 따른 비밀 보장에 관한 주정부 정책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각 참여 기관은 현재 개인 신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관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를 일반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정보 파기

34 CFR 300.624 항

수집, 보관 또는 이용 중인 개인 신원 정보가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학군은 이를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학년, 출석 기록, 이수 수업, 이수 학년, 이수 년도의 영구 기록은 무기한 보존될 수 있다.

주 민원 절차

적법 절차 심리 민원과 주 민원 절차 간의 차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의 규정은 주 민원과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심리에 대해 각기 다른 절차를 정의한다. 아래 설명한 바와 같이, 개인 혹은 조직은 학군, 뉴욕주 교육부(NYSED) 또는 기타 공공 기관에 의한 파트 B 요건의 위반을 주장하는 주 민원을 제출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학군만이 장애 아동의 판정, 평가 또는 학교 배정의 개시 또는 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부, 혹은 자녀에 대한 무상 공립교육(FAPE)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기한이 별도로 연장되지 않는 한, NYSED 직원은 주 민원을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공정한 심리관은 (합의 회의 또는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심리하고 (이 문서의 합의 과정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합의 기간 종료 후 45 일 이내에, 유치원생의 경우 30 일 이내에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단, 심리관이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기한은 학부모 또는 학군이 요청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주 민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심리 절차는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주 민원 절차 확립

34 CFR 300.151 항; 8 NYCRR 200.5(l)항

개요

NYSED 는 다음의 절차를 서면으로 확립해 놓아야 한다.

1. 다른 주의 주민 또는 기관이 접수한 민원 등 민원 해결 절차
2. NYSED 에 민원 접수 절차 주의 민원은 다음으로 송부될 수 있다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Special Education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EB
   Albany, NY 12234
3. 주 민원 절차를 학부모, 기타 관심있는 개인(학부모 교육 및 정보센터, 보호 및 옹호단체, 자립생활 센터, 기타 해당 조직 등)에게 널리 홍보하는 절차

적절한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구제책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NYSED 가 판정한 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NYSED 는

1.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시정 조치 등 적절한 서비스 제공의 실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u>또한</u>
2. 모든 장애 아동을 위한 향후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해결해야 한다.

최소 주 민원 절차

34 CFR 300.152 항; 8 NYCRR 200.5(l)항

시간 제한, 최소 절차

NYSED는 민원이 접수된 후 다음을 실행하도록 주 민원 절차에 60일의 시간 제한을 두어야 한다.

1. 조사가 필요하다고 NYSED가 판단하는 경우 독자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2. 민원자(민원 제출자)에게 민원 진술에 관한 추가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최소한 (a) 기관의 재량에 따라 민원 해결을 위한 제안 **<u>및</u>** (b) 민원을 접수한 학부모와 해당 기관이 중재에 참여하도록 자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 등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관련된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의 요건을 위반하고 있는지 독자적 결정을 내린다. **<u>또한</u>**
5. 민원의 각 주장을 검토하고 (a) 진상조사와 결론 **<u>및</u>** (b) NYSED 최종 판결 사유 등을 기술하는 서면 판결을 민원인에게 내린다.

기한 연장, 최종 판결, 시행

상기 기술한 NYSED 의 절차는 또한

1. (a) 특정 주 민원과 관련된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u>또는</u>**(b) 학부모, 학군 또는 관련 공공 기관이 중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한 연장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 60일간 기한을 연장해 주어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a) 기술 지원 활동 (b) 협상, **<u>및</u>** (c) 규제준수를 위한 시정 조치 등 NYSED의 최종 판결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주 민원 및 적법 절차 심리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법 절차 심리의 안건이기도 한 주 민원을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주 민원에 적법 절차 심리의 일부인 하나 이상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NYSED 는 심리가 종료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에서 다루는 주 민원 또는 주 민원의 일부를 보류해야 한다. 적법 절차 심리의 일부가 아닌 주 민원의 문제는 상기 기술한 시간 제한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주 민원에 제기된 문제가 동일 당사자(학부모, 학군)가 연루 된 이전 적법 절차 심리에서 판결된 경우, 이전 적법 절차 심리 판결이 해당 문제에 구속력을 가지며, NYSED는 민원인에게 판결에 구속력이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학군 또는 다른 공공 기관이 적법 절차 심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은 NYSED가 해결해야 한다.

민원 접수

34 CFR 300.153 항; 8 NYCRR 200.5(l)항

조직 또는 개인은 상기 기술한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주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주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학군 또는 기타 공공 기관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의 요건 또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진술
2. 진술의 토대가 되는 사실
3. 민원인의 서명 및 연락처 정보, 및
4. 특정 아동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a) 아동의 이름, 아동 거주지 주소
   (b)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c)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연락 가능한 정보 및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d) 문제와 관련된 사실 등 아동 관련 문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 <u>및</u>
   (e) 민원을 접수할 당시 민원인이 알고 있었던 한도 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

민원은 주 민원 절차 확립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1 년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을 주장해야 한다.

주 민원을 접수하는 민원인은 NYSED 에 민원을 접수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군 또는 공공 기관에 민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34 CFR 300.507 항; 8 NYCRR 200.5(i) 및 200.5(j)항

개요

학부모 또는 학군은 아동의 판정, 평가 또는 학교 배정의 개시/변경에 대한 제안 또는 거절, 혹은 무상 공립교육(FAPE) 제공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은 학부모 또는 학군이 민원의 토대가 된 문제 행동에 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사항을 제기해야 한다.

학부모가 다음의 이유로 기한 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없었던 경우, 상기 기한은 학부모에 적용되지 않는다.

1. 학군이 민원에 명시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잘못 전달한 경우, **또는**
2.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학군이 학부모에게 제공해야 했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를 위한 정보

학부모가 정보를 요청하거나 **혹은** 학부모 또는 학군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 학군은 인근 지역의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서비스, 기타 관련 서비스 제공을 학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34 CFR 300.508 항; 8 NYCRR 200.5(i) 및 (j)항

개요

심리를 요청하기 위해 학부모 또는 학군(또는 양측의 변호사)은 상대방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그 내용을 비밀로 보장해야 한다.

민원 제출 당사자가 누구든지 간에, 학부모 또는 학군은 NYSED 에 민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의 내용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아동 이름
2. 아동 거주지 주소

3.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4.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의 경우, 아동의 연락처 정보 및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명
5. 문제와 관련된 사실 등 제안 또는 거절한 조치와 관련된 아동 문제의 본질에 관한 설명, 및
6. 당시 학부모 또는 학군이 알고 있었던 한도 내에서의 문제 해결책 제안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에 앞서 통지 필요

학부모 또는 학군은 자신(또는 양측 변호사)이 상기 기술한 정보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때까지 적법 절차 심리를 열 수 없다.

충분한 민원 내용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진행되려면, 민원의 내용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적법 절차 민원을 수령한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가 심리관과 상대방에게 민원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상기 기술한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은 충분한 것(상기 기술한 내용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민원 수령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로부터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내용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공정한 심리관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상기 기술한 요건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학부모와 학군에 모두 서면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민원 수정

학부모 또는 학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민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민원 변경을 서면으로 승인하고 아래 설명된 합의 회의를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 또는
2.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늦어도 5일 이전에 심리관이 민원 변경을 허락하는 경우

민원인(학부모 또는 학군)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변경하는 경우, 합의 회의(민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와 합의 기간(민원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의 일정은 수정된 민원 접수일로부터 다시 시작된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지방 교육 기관(LEA) 또는 학군의 대응

*사전 서면 통지*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군이 학부모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제기된 주요 사안에 관한 사전 서면 통지를 우송하지 않은 경우, 학군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답변서를 학부모에게 우송해야 한다.

1. 학군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언급된 해당 조치의 이행을 제안 또는 거부한 이유에 관한 설명
2. 아동의 CSE 또는 CPSE가 고려했던 다른 방안과 그 방안을 거부한 이유에 관한 설명

3. 학군이 조치를 제안 또는 거부할 때 토대로 사용한 평가 절차, 검증, 기록 또는 보고서에 관한 설명, 및
4.
5. 학군이 제안 또는 거부한 조치와 관련된 다른 요소들에 관한 설명

상기 1-4항의 항목을 제출하더라도, 학군은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대한 상대방의 대응

바로 앞 절인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지방 교육 기관(LEA) 또는 학군의 대응*** 절에서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수령 상대방은 민원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민원에 명시된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답변을 상대방에게 보내야 한다.

견본 양식

34 CFR 300.509 항

NYSED 는 학부모가 주 민원과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하도록 돕는 견본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NYSED 또는 학군은 학부모의 견본 양식 이용을 의무화할 수 없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또는 주 민원을 접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 학부모는 뉴욕주의 견본 양식 또는 적절한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의 견본 양식은 http://www.p12.nysed.gov/specialed/에서 찾을 수 있다. 학군이 학부모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이며 또는 NYSED, P-12 교육부의 특수 교육 사무실에 518-473-2878 번으로 연락하여 받아 볼 수 있다.

중재

34 CFR 300.506 항; 8 NYCRR 200.5(h)항

개요

학군은 양측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이전에 발생하는 사안 등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의 사안과 관련된 의견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절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가 제공된다.

요건

이 절차는 중재 과정에 관한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1. 중재 과정에는 학부모와 학군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2. 중재 과정은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명시된 학부모의 다른 권리를 거부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3. 중재는 효과적인 중재 기술을 훈련받은 자격 요건을 갖춘 공정한 중재자가 실행해야 한다.

학군은 중재 과정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부모와 학군이 다음과 같은 공정한 인사와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분쟁 해결 센터(Community Dispute Resolution Center, CDRC)와 계약을 체결한 자, **및**
2. 학부모에게 중재 과정의 혜택을 설명하고 이의 이용을 권장하는 자

뉴욕주는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규와 규정을 알고 있으며 CDRC 에서 훈련받은 적임의 중재자를 이용한다. 중재자는 CDRC 들이 임의, 로테이션 또는 기타 공정한 방식으로 선출한다.

중재 주선

중재는 CDRC 들과 함께 학군을 통해 주선한다. 주정부가 회의 비용 등 중재 과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 과정에서 각 회의의 일정은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정하고 학부모와 학군에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중재 합의

학부모와 학군이 중재 과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양측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다음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문을 작성해야 한다.

1. 중재 과정에서의 모든 논의는 비밀로 보장되고 후속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2. 학군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의 학군 대표와 학부모가 이에 서명한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한 중재 합의서는 모든 주 관할 법원(주 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 또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강제력을 갖는다.

중재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은 비밀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향후 적법 절차 심리 또는 IDEA의 파트 B에 따라 지원을 받는 주의 연방 또는 주 법원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이용할 수 없다.

중재자의 공정성

중재자는

1. 주교육기관 또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개입하는 학교 직원일 수 없다. **또한**
2. 중재자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중재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정부기관 또는 학군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학군 또는 주정부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및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자녀의 학교 배정

34 CFR 300.518 항; 8 NYCRR 200.5(m)항

장애 아동 징계 절차절에 기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합의 기간 동안 혹은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또는 법정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학부모와 학군 또는 학부모와 주재심 담당관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아동은 현재 배정 받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한다.

적법 절차 소송이 1 차 평가를 위한 동의와 관련된 소송인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최초의 공립학교 입학 신청과 관련된 경우, 모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의 동의 하에 아동을 일반 공립학교 프로그램에 배정해야 한다.

유치원 특수 교육 서비스를 받았고 이제 취학 연령인 아동이 심리 또는 항소 중일 경우, 유치원 프로그램이 취학 연령을 위한 특수 교육 프로그램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일 경우, 유치원 프로그램에 남아있을 수 있다.

취학 연령 이전의 아동이 특수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지 않은 경우, 만약 학부모와 학군이 동의한다면 심리 또는 항소 기간 중 아동에게 특수 교육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C(조기 개입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다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취학 연령 이전 특별 교육 서비스)에 따라 서비스를 전환하여 제공받게 될 아동, 3 세가 되어 파트 C 의 서비스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아동을 위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의 서비스를 처음으로 신청하는 신청과 관련된 경우, 학군은 아동이 받아온 파트 C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아동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고 학부모가 아동이 처음으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는데 동의하는 경우,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학군은 분쟁의 대상이 아닌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학부모와 학군이 동의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아이가 조기 개입 서비스를 받았고 유치원 나이가 아니면, 심문과 항소 중에 아이는 유치원 프로그램이 승인받은 경우에, 조기 개입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특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합의 과정

34 CFR 300.510 항; 8 NYCRR 200.5(j)항

합의 회의

학부모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그리고 적법 절차 심리가 시작되기 전, 학군은 학부모, 민원에 명시된 사안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들과 회의를 가져야 한다. 회의에는

1. 학군을 대신하여 의사 결정권을 가진 학군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 **또한**
2. 학부모가 변호사를 동반하지 않는 한 학군의 변호사도 참여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학군이 회의에 참석할 CSE 또는 CPSE 의 관련 위원을 결정한다.

회의의 목적은 학부모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민원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토의하여 학군에 분쟁을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다음의 경우 합의 회의는 필요하지 않다.

1. 학부모와 학군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2. 학부모와 학군이 *중재*절에 기술한 중재 과정을 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

학군은 학부모가 합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모든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합의 기간

학군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수령한 후 30일 이내(해결 기간 동안)에 학부모가 만족할 만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릴 수 있다.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기한은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일, 유치원생의 경우 30일이 주어지며 이 기한은 30일 간의 합의 기간이 종료된 후 시작된다. 단 아래 기술한 바와 같이 30일 간의 합의 기간을 수정하는 예외 상황이 존재한다.

학부모와 학군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또는 중재 과정을 이용하기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학부모가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합의 과정과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을 연기할 것이다.** 학부모가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공정한 심리관은 적법 절차 심리를 기각할 수 있다.

납득할 만한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문서화한 후에도 학군이 학부모의 합의 회의 참석을 종용할 수 없는 경우, 30일 간의 합의 기간이 종료된 후 학군은 공정한 심리관으로 하여금 학부모의 적법 절차 심리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문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 등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려는 학군의 노력을 기록해야 한다.

1. 전화 통화 기록 또는 통화 시도 내역, 통화 결과
2. 학부모에게 보낸 서신과 학부모로부터 받은 답변의 사본, 및
3. 학부모 집 또는 직장 방문의 세부 기록, 방문 결과

학군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합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거나 **또는** 합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부모는 심리관에게 취학 연령 학생을 위한 45일 (또는 유치원생의 경우 30일)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의 시작을 주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0 일 간의 합의 기간 수정

학부모와 학군이 합의 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취학 연령 학생을 위한 45일 (또는 유치원의 경우 30일)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이 익일부터 시작된다.

중재 또는 합의 회의가 시작된 후, 그리고 30일 간의 합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학부모와 학군이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데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 취학 연령 학생을 위한 45일 또는 유치원생을 위한 30일의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

학부모와 학군이 중재 과정을 이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30일 간의 합의 기간이 종료된 후 양측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중재를 계속하기로 서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학부모 또는 학군 중 일방이 중재 과정에서 철회하는 경우, 45일 또는 30일의 적법 절차 심리 기한이 익일부터 시작된다.

서면 합의

합의 회의를 통해 분쟁 해결에 이른 경우, 학부모와 학군은 다음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1. 학군 구속 권한이 있는 학군 대표와 학부모가 이에 서명한다. **또한**
2. 주 관할 법원(주법에 따라 이러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 또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강제력을 갖는다.

합의 검토 기간

학부모와 학군이 합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른 경우, 어느 일방(학부모 또는 학군)이 양측이 합의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영업일 3일 이내에 합의서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34 CFR 300.511 항; 8 NYCRR 200.1(x), 200.5(i) 및 (j)항

개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에 연루된 학부모 또는 학군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합의 과정***절에 기술된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학군은 로테이션 목록에서 공정한 심리관을 임명한다. 공정한 심리관이 공정한 심리를 진행한다.

공정한 심리관(IHO)

최소한 공정한 심리관(IHO)은

1. 주교육기관 또는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에 개입하는 학교 직원일 수 없다. 그러나 심리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기관의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심리에서 심리관의 객관성을 저해하는 개인적 또는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3. 장애인교육법(IDEA)의 조항, 장애인교육법(IDEA)에 관한 연방/뉴욕주 규정, 연방/주 법원에 의한 장애인교육법(IDEA)의 법적 해석에 대해 정통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u>또한</u>
4. 심리를 진행하고 일반 법률 관행과 일치하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각 학군은 공정한 심리관(IHO)으로 근무하는 자의 명단을 보관해야 한다.

적법 절차 심리의 안건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에 언급하지 않은 사안을 심리에서 제기할 수 없다.

심리 요청 기한

학부모 또는 학군은 민원에 언급된 사안에 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의 공정한 심리를 요청해야 한다.

기한의 예외

학부모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없었던 경우, 상기 기한은 학부모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 학부모가 민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또는 사안을 학군이 해결했다고 잘못 전달한 경우, <u>또는</u>

2. 학군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학부모에 제공해야 했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심리권

34 CFR 300.512 항; 8 NYCRR 200.5(j)항

개요

(징계 절차 관련 심리 등을 포함한) 적법 절차 심리 당사자 또는 ***판결 항소인 적접 벌차 재심*** 절에 기술된 항소 당사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변호사 및/또는 장애 아동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 또는 교육을 받은 개인을 대동하고 그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2. 증거 제출, 대질, 반대 심문,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심리가 열리기 적어도 영업일 5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은 증거를 심리에서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
4. 서면 또는 원하는 경우 전자 축어식 심리 기록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u>및</u>
5. 서면 또는 원하는 경우 전자 진상조사 결과, 전자 판결을 입수할 수 있는 권리

정보의 추가 공개

적법 절차 심리가 열리기 적어도 영업일 5일 전까지 학부모와 학군은 심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당일까지 완료된 모든 평가와 이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한 심리관(IHO)이 이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심리에 관련 평가 자료 또는 권고 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심리 중 학부모의 권리

학부모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1. 자녀를 참석시킬 권리
2. 일반 대중에 심리를 공개할 권리
3. 심리 기록, 진상조사 결과, 판결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권리, <u>또한</u>
4. 필요한 경우 청각 장애자 통역사 또는 학부모의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통역사를 무료로 제공 받을 권리

심리 판결

34 CFR 300.513 항; 8 NYCRR 200.5(j)항

심리관의 판결

아동이 무상 공립교육(FAPE)을 받았는지에 관한 공정한 심리관의 판결은 실질적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절차 위반을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정한 심리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아동이 무상 공립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 있다.

1.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아동이 무상 공립교육을 받을 권리를 방해받은 경우
2.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학부모가 아동의 무상 공립교육 제공에 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 **또는**
3. 절차상의 부적합성으로 인해 교육 혜택을 박탈당한 경우

해석 조항

상기 기술한 어떠한 조항도 공정한 심리관이 학군에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CFR 300.500 항에서 300.536 항까지)의 연방 규정 절차상의 보호조항절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접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견본 양식, 합의 과정,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 심리권, 심리 판결 (34 CFR 300.507 항에서 300.513 항까지)절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도 주재심 담당관(SRO)에 적법 절차 심리 판결을 항소할 수 있는 학부모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항소 - 최종 판결** 절 참조)

적법 절차 심리에 대한 별도의 요청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34 CFR 300.500항에서 300.536항까지)의 연방 규정 절차상의 보호조항절에 명시된 어떠한 조항도 학부모가 이미 접수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과 전혀 별개인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자문위원회와 일반 대중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및 판결

(심리를 책임진) 주 교육기관 또는 학군은 개인 신원 정보를 삭제한 후 적법 절차 심리 또는 항소의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NYSED에 제공해야 한다. NYSED는 청장의 특수교육자문위원회에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제출하고 이를 대중에 공개할 것이다.

항소

최종 판결, 항소, 공정한 재심

34 CFR 300.514 항; 8 NYCRR 200.5(k)항

최종 심리 판결

적법 절차 심리에 연루된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가 심리(징계 절차 관련 심리 포함)에서 내린 판결에 불복하여 NYSED 주재심 담당실에 항소하지 않는 한, 이는 최종 판결이 된다.

IHO 판정에 대한 주 수준의 항소

1. 학부모나 학군이 주재심 담당관(SRO)에게 IHO 의 재심을 요청하지 않는 한, IHO 가 내린 판정은 최종적이다. 학부모가 SRO 에 IHO 의 항소를 원할 경우, 신청서 그리고 양식 A 를 학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에게 IHO 의 판정이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일 및 그 이후 4 일은 25 일 및 35 일 날짜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SRO 는 Form B) is served on the school d 양식 B 가 학군에 제출되기 10 일전까지**학군에 직접 제출되는 경우 IHO 의 판정일부터 35 일 이내에** 검토 추구 의향 통지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린다. SRO 는 학부모나 학군의 요청에 따라 시간을 30 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2. 서면 사본, 사실증명서 및 판정서는 학부모나 변호사 및 교육위원회 (BOE)로 30 일 이내에 우편송달한다.

SRO 로의 항소장 접수 방법은 http://www.sro.nysed.gov/appeals.htm.에서 찾을 수 있다.

항소가 접수되면 주재심 담당관(SRO)은 항소된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공정하게 재심사해야 한다. 재심 담당관은

1. 전체 심리 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2. 심리 절차가 적법 절차 요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심리를 여는 경우, 상기 *심리권*절에 기술한 심리권이 적용된다.
4. 재심 당당관의 판단으로 당사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 논쟁을 할 기회를 제공한다.
5. 재심을 완료한 후 독자적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6. 학부모와 학군에 서면 또는 학부모가 원하는 경우 전자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제공해야 한다.

자문위원회와 대중에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 공개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한 뒤 SRO는,

1. 주특수교육자문위원회(청장의 특수교육자문위원회)에 항소의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최종 재심 판결

학부모 또는 학군이 아래 기술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주재심 담당관(SRO)의 판결이 최종 판결의 효력을 갖는다.

심리와 재심의 기한 및 편리성

34 CFR 300.515 항; 8 NYCRR 200.5(j) 및 200.16(h)항

학군은 30 일의 합의 회의 기간이 만료된 후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 일, 유치원생의 경우 30 일 이내에 **또는 다음의 30** 일 합의 기간 수정*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조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 일, 유치원생의 경우 30 일 이내에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심리의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2. 판결 사본을 학부모와 학군에 우송해야 한다.

주재심 담당관(SRO)은 재심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다음을 실행해야 한다.

1. 재심의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또한**
2. 판결 사본을 학부모와 학군에 우송해야 한다.

학부모 또는 학군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한 심리관 또는 주재심 담당관(SRO)이 상기 기술한 기한(취학 연령 학생의 경우 45 일 또는 유치원생의 경우 30 일의 심리 판결 기한과 30 일의 주재심 담당관(SRO) 판결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구두로 의견을 표명하는 각각의 심리와 재심은 학부모와 학군에 편리한 장소와 시간에 열려야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민사소송

34 CFR 300.516 항; 8 NYCRR 200.5(k)항

개요

주정부 재심의 진상조사 결과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는 적법 절차 심리(징계 절차에 관한 심리 등)의 안건이었던 사안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민사소송은 분쟁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관할 법원(이러한 소송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 또는 연방 지방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시간 제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학부모 또는 학군)는 주재심 담당관(SRO)의 판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추가 절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1. 행정 재판의 기록을 수령한다.
2. 학부모 또는 학군의 요청에 따라 추가 증거 진술을 듣는다. 또한
3. 증거 우위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조치를 부여한다.

지방 법원의 재판권

연방 지방 법원은 분쟁의 규모에 관계없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판결할 권한을 가진다.

해석의 규칙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의 어떠한 조항도 미헌법, 1990년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1973년 재활법 5편(Title V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504조)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명시된 권리, 절차, 구제조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명시된 구제조치를 구하는 상기 법안들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는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도로 상기 기술한 적법 절차를 모두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부모가 장애인교육법(IDEA)에 명시된 구제조치와 중복되는 다른 법안에 명시된 구제조치를 추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른 법안에 명시된 구제조치를 추구하기 위해 법원으로 직행하기 전, 학부모는 장애인교육법(IDEA)에 명시된 행정 구제조치(예: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합의 회의, 공정한 적법 절차 심리)를 먼저 이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변호사 비용

34 CFR 300.517 항

개요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학부모가 승소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a) 법원이 판단하기에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민원 또는 소송을 학부모의 변호사가 제기한 경우 승소한 학군 또는 NYSED에 대해서 학부모 또는 변호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또는 (b) 명확히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판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학부모 변호사가

{183}승소한 학군 또는 NYSED에게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또는 (b) 명확히 경솔하고 불합리하며 근거 없는 소송으로 판정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학부모 변호사가 승소한 SEA 또는 학군에게 비용의 일부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비용 제공

법원은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1. 비용은 소송 또는 심리가 시작된 지역사회에서 해당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서비스의 종류와 질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요율에 따라 정해야 한다. 제공할 비용 계산에 보너스 또는 승수를 사용할 수 없다.
2. 다음의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제기된 소송 또는 재판에서 서면 합의를 제안한 후 실행한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관련 비용을 상환받을 수 없다.
   a. 연방민사소송규칙 68(Rule 68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 명시된 기한 내에 또는 적법 절차 심리 또는 주차원 재심리의 경우 재판이 시작되기 10일 이상 이전에 합의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
   b. 합의 제안을 1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은 경우, <u>또한</u>
   c. 법원 또는 행정 심리관이 학부모에게 최종적으로 부여된 구제조치가 합의 제안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제한사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승소하고 합의 제의를 거절할 만큼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경우,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행정 소송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 CSE 또는 CPSE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 회의의 관련 비용을 제공받을 수 없다. *중재*절에 기술된 중재 비용은 제공받을 수 없다.

   합의 회의절에 기술된 합의 회의는 행정 심리 또는 법정 소송의 결과 소집된 회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변호사 비용 제공을 위한 목적에서도 행정 심리 또는 법정 소송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음의 경우, 법원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제공되는 변호사 비용을 삭감한다.

1. 학부모 또는 그 변호사가 소송 또는 재판 과정에서 분쟁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된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유사한 능력, 지명도, 경험을 가진 지역 변호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의 시간당 평균 요율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3. 소송 또는 재판의 성격에 비해 투자한 시간과 제공한 법률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u>또는</u>

4. 학부모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절에 기술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의 해당 정보를 학군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나 법원이 주 또는 학군이 소송 또는 재판의 최종 해결을 부당하게 지연시켰거나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의 절차상 보호수단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을 삭감할 수 없다.

장애 아동 징계 절차

교직원의 권한

34 CFR 300.530 항; 8 NYCRR 201.2 - 201.7 항

사례별 판결

징계와 관련된 다음 요건에 따라 실행한 학교 배정에서의 변경이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학생에 적합한지를 결정할 때, 교직원은 사례별로 특수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개요

장애 학생 징계 절차는 교육법(Education Law) 3214 조와 교육청장규정 파트 201(Regulations of the Commissioner of Education)을 준수해야 한다.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하는 아동을 정학 또는 퇴교시킬 권한이 학교에 있을지라도, 학부모와 아동도 이 과정에서 일부 권리를 가진다.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권리

1. 수업일 5 일 이하의 정학 조치가 제안된 경우, 이를 가능한 한 즉시 전화로 통보받고 24 시간 이내에 서면 통지를 받을 권리. 통지에는 사건, 제안된 정학 조치, 아동의 권리를 기술해야 한다. 학부모는 또한 자녀의 등교가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정학 조치 이전에 교장과의 비공식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자녀의 등교가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비공식 회의는 정학 처리 후 가질 수 있다.)
2. 수업일 5 일 이상의 정학의 경우, 교장의 증언 청취 기회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통지는 조언을 받고 증인을 심문하고 출두시킬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설명한다.
3. 아동이 의무 취학 연령인 경우, 정학 또는 퇴교 기간의 첫 10 일 동안 일반 학생과 동일한 정도의 대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장애 학생에 적용되는 권리

일반 아동에 취하는 조치와 같은 정도로, 교직원은 최대 연속 **수업일 10일** 동안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장애 아동을 현재 학교에서부터 아동의 CSE 또는 CPSE가 결정하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 기타 다른 환경으로 배정하거나 정학시킬 수 있다. 퇴교 조치가 학교 배정의 변경(정의는 다음의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교직원은 한 학년도에 각기 다른 비행에 대해 연속 ***수업일 1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추가로 아동에 퇴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장애 아동이 한 학년도에 총 **수업일 10 일** 동안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퇴교당한 후 동일 학년도에 추가로 퇴교당하는 경우, 학군은 그 기간 동안 *서비스*절에 명시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 권한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한 행위가 아동의 장애에 따른 증후(다음의 ***장애에 따른 증후 판정*** 참조)가 아니고 징계상의 학교 배정 변경이 연속 **수업일 10 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군이 ***서비스***절에 기술된 서비스를 장애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곤, 교직원은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징계 절차를 장애 학생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다. 아동의 CSE 또는 CPSE 가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을 결정한다.

서비스

배정받은 학교에서 퇴교당한 장애 아동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는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에서 제공할 수 있다.

학군이 유사하게 퇴교 처분을 당한 일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한 학년도에 **수업일 10 일 이하**의 기간 동안 현재 배정받은 학교에서 퇴교 당한 장애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의무 취학 연령인 경우, 뉴욕주의 학군은 한 학년도에 10 일 이하로 정학당한 장애 학생에게 대안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이 의무 취학 연령이 아닌 경우, 일반 학생들에게 대안 수업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 학생에게도 대안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한 학년도에 정학 당한 첫 10 일 동안 장애 학생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일반 학생들에 대한 의무와 같다. 뉴욕주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대안 수업은 최소한 하루 1 시간, 중학생에 대한 대안 수업은 하루 2 시간 제공해야 한다. 의무 취학 연령이 아닌 학생이 정학 당한 경우, 학군이 대안 수업을 정상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장애 학생에게 대안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수업일 10일 이상 동안 현재 학교 배정에서 퇴교 당한 장애 아동은

1. 일반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교육 환경에서라도 교육 서비스를 계속하여 받고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 <u>또한</u>
2. 적절한 경우 기능 행동 평가, 다시는 규범을 위반하지 않도록 문제 행동을 해결하도록 고안된 행동 조정 서비스 및 개선(behavioral intervention services and modifications)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장애 아동이 한 학년도에 **수업일 10일** 동안 현재 배정 학교에서 퇴교 처분을 받았으며, <u>현재</u> 퇴교 기간이 연속 **수업일 10일** 또는 그 이하이고, **또한** 퇴교가 학교 배정의 변경(정의는 아래 참조)이 아닌 경우, 교직원은 <u>적어도</u> 한 명의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이 다른 교육 환경에서라도 일반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정도를 결정한다.

퇴교 처분이 학교 배정의 변경인 경우(정의는 아래 참조), 아동의 CSE 또는 CPSE가 아동이 다른 교육 환경에서라도 일반 교과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아동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에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진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한다.

장애에 따른 증후 결정

1. 배정을 변경하기로 결정(연속 **수업일 10일** 또는 이하의 퇴교 처분과 학교 배정의 변경이 아닌 퇴교 처분의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 학군, 학부모, CSE/CPSE 관련 위원(학부모와 학군이 결정)이 이러한 결정 후 **수업일 10일** 이내에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 교사 관찰 사항, 학부모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 등 학생 파일의 모든 관련 정보를 검토하여 다음을 결정해야 한다.

학군, 학부모, 아동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상기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문제 행동을 아동의 장애에 따른 증후로 판정해야 한다.

학군, 학부모, 아동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문제 행동을 학군이 아동 개별 교육 프로그램(IEP)을 실행하지 못함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판정하는 경우, 학군은 이러한 문제를 치유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동이 아동의 장애에 따른 증후인지에 관한 결정

학군, 학부모, CSE 또는 CPSE 관련 위원이 문제 행동이 아동의 장애에 따른 증후로 판정하는 경우, CSE 또는 CPSE 는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해야 한다.

1. 학교 배정의 변경을 초래한 문제의 행동이 발생하기 전, 학군이 기능 행동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을 위한 행동 조정 계획을 실행한다. <u>또는</u>
2. 행동 조정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재검토하고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한다.

다음의 ***특별 상황***절에 기술된 경우를 제외하곤, 학군은 문제 아동을 퇴교 조치한 원래 배정 학교로 돌려 보내야 한다. 단 학부모와 학군이 행동 조정 계획 수정의 일환으로 학교 배정을 변경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특별 상황

문제 행동이 아동의 장애로 인한 증후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다음의 경우 교직원은 (아동의 CSE 또는 CPSE 결정에 따라) 최고 수업일 45 일 동안 학생을 기존 학교에서 퇴교하여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으로 보낼 수 있다.

1. 아동이 무기(정의는 아래 참조)를 소지하고 등교하거나 수업 중, 교내에서 또는 NYSED 또는 학군의 관할권에 속하는 학교 행사에 무기를 소지하는 경우
2. 아동이 수업 중, 교내에서 또는 NYSED 또는 학군의 관할권에 속하는 학교 행사에서 의도적으로 불법 약물(정의는 아래 참조)을 소지하거나 사용하고 규제 약물(정의는 아래 참조)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 <u>또는</u>
3. 아동이 수업 중, 교내에서 또는 NYSED 또는 학군의 관할권에 속하는 학교 행사에서 다른 사람에 심각한 신체 상해(정의는 아래 참조)를 입힌 경우

정의

*규제 약물*은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21 U.S.C. 812(c)) 202(c)항의 스케줄 I, II, III, IV 또는 V에 규정된 약물 또는 기타 물질을 가리킨다.

*불법 약물*은 규제 약물을 가리키나, 면허 취득 의료 서비스 전문가의 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규제 약물 또는 규제약물법, 연방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규제 약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각한 신체 상해*란 미법령(United States Code) 18장 1365조 (h)항 (3)에 명시된 "심각한 신체 상해"의 의미를 가진다.

*무기*란 미법령(United States Code) 18장 930조 (g)항 (2)에 명시된 "위험한 무기"의 의미를 가진다.

통지

학군이 학생 행동 규범의 위반으로 인해 학교 배정을 변경하는 퇴교 결정을 내리는 경우, 학군은 결정 당일 학부모에 이를 통지하고 절차상 보호조항에 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퇴교 징계로 인한 학교 배정의 변경

34 CFR 300.536 항; 8 NYCRR 201.2 항

다음의 경우, 장애 아동을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퇴교시키는 것이 **학교 배정의 변경**에 해당된다.

1. 퇴교 기간이 연속 수업일 10일 이상인 경우, <u>또는</u>
2. 다음 사유로 인해 아동이 일정한 경향을 갖는 일련의 퇴교 조치를 당한 경우
   a. 한 학년도에 일련의 퇴교 일수가 총 수업일 10일을 초과하기에
   b. 아동의 행동이 일련의 퇴교 조치를 결과한 이전의 문제 행동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기에, 또한
   c. 각각의 퇴교 기간, 아동이 퇴교 당한 총 시간, 짧은 시간 내의 추가 퇴교 등과 같은 추가 요소로 인해

퇴교의 경향이 학교 배정에서의 변경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학군이 사례별로 결정하고, 학군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적법 절차와 사법 재판을 통해 재심을 받게 된다.

환경 결정

34 CFR 300.531 항; 8 NYCRR 201.10 항

CSE 또는 CPSE 는 **학교 배정을 변경**하는 퇴교, 상기 ***추가 권한***, ***특별 상황***절에 따른 퇴교를 위해 임시 대안 학교 환경(IAES)을 결정해야 한다.

항소

34 CFR 300.532 항; 8 NYCRR 201.11 항

개요

장애 아동의 학부모가 다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상기 참조)을 접수할 수 있다.

1. 이 징계 조항에 따른 학교 배정에 관한 결정, **또는**
2. 상기 기술한 장애로 인한 증후 결정

아동을 현재와 같이 계속 배정하는 경우 아동 자신 또는 다른 아동에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학군이 믿는 경우, 적법 절차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상기 참조)을 접수할 수 있다.

공정한 심리관의 권한

*공정한 심리관*절에 기술된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심리관은 적법 절차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심리관은

1. 퇴교 조치가 *교직원 권한*절에 명시된 요건을 위반하거나 아동의 행동이 장애로 인한 증후로 판단되는 경우, 장애 아동을 퇴교 조치한 이전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다. **또한**
2. 아동을 현행 학교에 그대로 배정하는 경우 아동 자신 또는 다른 아동에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45일 동안 적절한 IAES로 장애 학생의 학교 배정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학군이 장애 학생이 원래 배정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아동 자신 또는 다른 아동에 상해를 야기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심리 절차를 반복할 수 있다.

학부모 또는 학군이 심리를 요청하는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시키는 경우,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절차,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심리*, *판결 항소, 공정한 재심*절에 기술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심리를 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1. 학군이 심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수업일 **20 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하고 심리 후 수업일 **10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할 신속 적법 절차 심리를 개최해야 하는 경우
2. 학부모와 학군이 회의를 갖지 않기로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또는 중재를 이용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접수한 후 **7 일 이내에** 합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 통지를 접수한 후 **15 일** 이내에 양측이 만족스러워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다른 적법 절차 심리의 판결에 항소(상기의 *항소*절 참조)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 적법 절차 심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기간 동안의 학교 배정

34 CFR 300.533 항; 8 NYCRR 201.10 항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학부모 또는 학군이 징계 문제와 관련된 적법 절차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경우, (학부모와 NYSED/학군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아동은 공정한 심리관의 판결이 날 때까지 또는 ***교직원의 권한***절에 규정된 퇴교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둘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임시 대안 교육 환경(IAES)에 남아있어야 한다.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아동의 보호

34 CFR 300.534 항; 8 NYCRR 201.5 항

개요

아동이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행동 규범을 위반했으나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 학군이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아래 결정된 것 처럼) 알고 있었던 경우, 아동은 이 통지에 기술된 모든 보호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음의 근거

다음의 경우, 학군이 징계 조치를 초래한 행동이 발생하기 전 아동이 장애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1. 학부모가 자녀에게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해당 교육 기관의 감독 또는 관리 직원, 혹은 아동의 교사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
2. 학부모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명시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평가를 요청한 경우, <u>또는</u>
3. 아동의 교사 또는 다른 학군 교직원이 해당 아동이 보인 행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를 학군의 특수 교육 책임자 또는 학군의 다른 감독관에게 직접 표명한 경우

예외

다음의 경우, 학군이 학생의 장애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1. 학부모가 아동의 평가를 허용하지 않았거나 특별 교육 서비스를 거부했던 경우, <u>또는</u>
2. 아동이 평가를 받았으나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명시된 장애 아동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

알고 있었음의 근거가 없는 경우 적용되는 조건

아동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하기 전 학군이 ***징계 문제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음의 근거***, ***예외***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이 장애 아동임을 알고 있지 못했던 경우, 아동은 일반 학생이 유사한 행위를 범했을 때 적용받는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이 징계를 받는 도중 아동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은 정학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퇴학 등 학교 당국이 결정한 교육 배정의 상태에 남아있게 된다.

학군이 실시한 평가 정보와 학부모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아동이 장애 아동으로 판정되는 경우, 학군은 상기 기술한 징계 요건 등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에 따라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 집행기관과 사법 당국에 신고 및 이들 기관의 조치

34 CFR 300.535 항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는

1. 기관이 장애 아동이 범한 범죄를 해당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또는**
2. 주 법집행기관과 사법 당국이 장애 아동이 범한 범죄에 연방법과 주법을 적용하는 책임 이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기록 제출

학군이 장애 아동이 범한 범죄를 보고하는 경우, 학군은

1. 범죄를 신고받은 당국이 고려할 수 있도록 아동의 특수 교육 기록과 징계 기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 아동의 특수 교육 기록과 징계 기록 사본은 FERPA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제출할 수 있다.

공공, 민간 혜택/보험 이용

공립 및 민간 보험/혜택의 사용

34 CFR 섹션 300.154(d) 및 (e); 8 NYCRR 섹션 200.5(b)(1)

학군은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이 허용하는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아동이 참여하는 메디케이드, 기타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이다.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1. 학군은
   - 아동이 무상 공립교육(FAPE)을 받기 위해 공공 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이에 등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소요되는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의 지급 등 학부모가 자비로 경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학군은 학부모가 결제해야 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이용이 다음을 결과할 경우, 이에 따른 아동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
     - 평생 보상범위 또는 다른 피보험자의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경우
     - 가족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이 수가를 부담하는 서비스와 아동이 학교에 있는 않은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족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 보험료을 인상시키거나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의 중지로 이어지는 경우
     - 총 의료 관련 지출에 따라 가정, 지역사회 기반 권리 포기의 자격요건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2. 학군은
   - ***학부모 동의 - 정의***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학부모 동의를 구해야 한다.
   - 학부모가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의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모든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학군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 아동

34 CFR 섹션 300.154(d) 및 (e); 8 NYCRR 섹션 200.5(b)(1)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학부모 동의 - 정의***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학군은 민간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군이 민간 보험금의 이용을 제안할 때마다, 이는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 학부모가 학군의 민간 보험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모든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학군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 학군은 학부모가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해야 할 비용(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개요

34 CFR 300.148 항

학군이 무상 공립교육을 장애 아동에게 제공했음에도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진학시키기로 선택한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는 학군으로 하여금 장애 학생이 사립학교나 시설에서 받은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34 CFR 300.131 - 300.144 항에 따라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에 진학시킨 경우, 사립학교가 소재한 학군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학생 그룹에 이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립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 상환

아동이 학군 권한에 속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이전에 받은 적이 있으며 학부모가 학군의 동의 또는 추천 없이 아동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 또는 공정한 심리관은 학부모의 사립학교 배치에 앞서 학군이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진학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군에게 사립학교 진학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정한 심리관 또는 법원은 사립학교 진학이 NYSED 와 학군 제공 교육에 적용되는 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립학교 진학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환 한도

상기 항에 기술한 상환 비용은 다음의 경우 감액 또는 거부당할 수 있다.

1. (a)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빼기 전 참석했던 가장 최근 CSE 또는 CPSE 회의에서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이 제안한 학교 배정을 거부한다는 의사(우려 표명,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겠다는 의사 등)를 CSE 또는 CPSE 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빼기 적어도 영업일 10 일(공휴일과 겹친 영업일 포함) 전에 이러한 의사를 학군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공립학교에서 아동을 빼기 전 학군이 아동을 평가할 계획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 설명 등)했으나 학부모가 아동을 평가에 임하게 하지 않은 경우, <u>또는</u>
3.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공공, 민간 혜택/보험 이용

공립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 아동

34 CFR 300.154(d)항; 8 NYCRR 200.5(b)(8)항

학군은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예: Medicaid)을 이용하여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 청구를 위하여 학군은:

1.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에 최초 가입하기에 앞서 귀하의 서면 동의(**학부모 동의 – 정의** 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를 얻어야 하며,

2. 학부모 또는 아동의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에 최초 가입 및 이후 매년 신청하기에 앞서 귀하에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본 서면 통지는 학부모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a) 아동이 무상 공립교육(FAPE)을 받기 위해 학부모가 공공 복지 혜택에 가입 또는 등록할 필요는 없다;
   b)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소요되는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의 지급 등 학부모가 자비로 경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c)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의 이용이 다음을 결과할 경우, 학군은 아동 복지 혜택을 이용할 수 없다:
      - 평생 보상범위 또는 다른 보장 혜택을 줄이는 경우;
      - 가족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 프로그램이 수가를 부담하는 서비스와 아동이 학교에 있지 않는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가족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 보험료를 인상시키거나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의 중지로 이어지는 경우
      - 총 의료 관련 지출에 따라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권리 포기의 자격요건을 상실할 위험이 있는 경우.
   d) 학부모가 공공 복지 혜택 또는 보험에 대한 접근 허가 동의를 거부 또는 철회하더라도 IEP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학군의 책임은 소멸되지 않으며,
   e) 학부모는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민간 보험의 혜택을 받는 장애 아동

34 CFR 300.154(e)항; 8 NYCRR 200.5(b)(9)항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학부모 동의 - 정의***절에 규정된 조항과 일치하는 동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학군은 민간 보험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군이 민간 보험금의 이용을 제안할 때마다, 이는

-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 학부모가 학군의 민간 보험 이용을 거부하더라도 모든 필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야 할 학군의 책임이 소멸되지 않음을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학군은 학부모가 복지 혜택 또는 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결제해야 할 비용(예: 공제액 또는 공동 부담금)을 지불하기 위해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기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학부모가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일방적으로 배정하기 위한 요건

개요

34 CFR 300.148 항

학군이 무상 공립교육을 장애 아동에게 제공했음에도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 또는 시설에 진학시키기로 선택한 경우,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는 학군으로 하여금 장애 학생이 사립학교나 시설에서 받은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등의 교육 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34 CFR 300.131 - 300.144 항에 따라 학부모가 아동을 사립학교에 진학시킨 경우, 사립학교가 소재한 학군은 장애인교육법(IDEA) 파트 B 에 따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학생 그룹에 이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

사립학교 진학에 따른 비용 상환

아동이 학군 권한에 속한 특수 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이전에 받은 적이 있으며 학부모가 학군의 동의 또는 추천 없이 아동을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진학시키기로 결정한 경우, 법원 또는 공정한 심리관은 학부모의 사립학교 배치에 앞서 학군이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사립학교 진학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학군에게 사립학교 진학 비용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정한 심리관 또는 법원은 사립학교 진학이 NYSED 와 학군 제공 교육에 적용되는 주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립학교 진학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환 한도

상기 항에 기술한 상환 비용은 다음의 경우 감액 또는 거부당할 수 있다.

1. (a)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빼기 전 참석했던 가장 최근 CSE 또는 CPSE 회의에서 아동에게 무상 공립교육(FAPE)을 제공하기 위해 학군이 제안한 학교 배정을 거부한다는 의사(우려 표명, 공공 비용으로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키겠다는 의사 등)를 CSE 또는 CPSE 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b) 학부모가 자녀를 공립학교에서 빼기 적어도 영업일 10 일(공휴일과 겹친 영업일 포함) 전에 이러한 의사를 학군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2. 공립학교에서 아동을 빼기 전 학군이 아동을 평가할 계획을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적절하고 합리적인 평가 목적 설명 등)했으나 학부모가 아동을 평가에 임하게 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법원이 학부모의 행동을 불합리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

그러나

1. (a) 학교가 학부모의 통지를 방해한 경우, (b) 학부모가 상기 기술한 통지의 책임에 관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c) 상기 요건을 준수할 시 아동이 신체적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환 비용을 감액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또한**
2. (a) 부모가 문맹이거나 영어를 쓸 수 없는 경우, 또는 (b) 상기 여건을 준수할 시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 또는 공정한 심리관의 재량에 따라 학부모가 의무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비용을 감액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참고 자료

USDOE - IDEA 사이트 - (미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파트 300 포함)
http://idea.ed.gov/

뉴욕주 교육부 - http://www.nysed.gov/home.html

특수 교육 사무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

교육 국장 규칙의 파트 200 및 201
http://www.p12.nysed.gov/specialed/lawsregs/part200.htm

특수 교육 업데이트 사무실 http://www.p12.nysed.gov/specialed/timely.htm

특수 교육 질적 보장 지역 사무실 –
일반 정보 http://www.p12.nysed.gov/specialed/quality/home.html
사무실 위치 http://www.p12.nysed.gov/specialed/quality/qaoffices.htm
(다음 페이지에 포함)

특수 교육 질적 보장 지역 사무실:

중부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Hughes State Office Building
333 E. Washington Street, Suite 527
Syracuse NY 13202
(315) 428-4556
(315) 428-4555 (팩스)

동부

Albany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Albany, NY 12234
(518) 486-6366
(518) 486-7693(팩스)

말론 사무실
(VR 지역 사무실)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209 West Main Street, Suite 3
Malone, NY 12953-9501
(518) 483-3530
(518) 483-3552(팩스)

허드슨 밸리

Albany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Albany, NY 12234
(518) 473-1185
(518) 402-3582 (팩스)

요크타운 하이츠 사무실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1 Gateway Plaza -3rd Floor
Port Chester, NY 10573
(914) 934-8270
(914) 934-7607 (팩스)

뉴욕시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55 Hanson Place, Room 545
Brooklyn, NY 11217-1580
(718) 722-4544
(718) 722-2032(팩스)

롱아일랜드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Perry B. Duryea, Jr. State Office Building
Room # 2A-5
Hauppauge , NY 11788
(631) 952-3352
(631) 952-3834 (팩스)

서부

(NYS 맹인 학교)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2A Richmond Avenue
Batavia, NY 14020
(585) 344-2002
(585) 344-2422(팩스)

비학군 사무실

Albany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89 Washington Avenue, Room 309
Albany, NY 12234
(518) 473-1185
(518) 486-7693(팩스)

Mid-Hudson 지역
뉴욕주 교육부
특수 교육 질적 보장
Mid-Hudson 학군 사무실
Manchester Mill Center, Suite 200
301 Manchester Road
Poughkeepsie, NY 12603
(845) 452-5336 (팩스)